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8. 19 선고 2022가단214001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

전 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박원경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안문호

변론종결 2022. 7. 8.

판결선고 2022. 8.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분양대행사 소속 C로부터 전화권유를 받고, 2021. 12. 28. 피고와 파주시에 건축 예정인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E호를 공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22. 1. 10. 피고에게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철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계약은 실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방문판매법의 주요 규정은 별지와 같은바,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하여 어떤 장소에서 만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령 내용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갑 제1, 4 내지 6호증, 을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21. 11.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 홈페이지에

관심고객으로 등록한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홍보 등을 담당한 분양대행사 직원 C는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수차례 전화 통화를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청약을 권유한 사실,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청약 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7. 탈락한 사실, 그 후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잔여 물량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1. 12. 28.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22.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철회하고 계약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전화권유로 청약을 유인하고 원고로 하여금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도록 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방문판매법 제8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이 사건 계약은 실효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계약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인 2021. 1. 14.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방문판매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피고가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방문판매법에서 전화권유판매자로 규정한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거나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한 사실이 없어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이 전화권유판매에 의해 체결된 점을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은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같은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방문판매법 제9조는 청약철회의 효과로서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반납하여야 할 주체에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및 소비자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하는바, 이와 같은 규정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이 전화권유평매로 이루어진 이상 원고는 위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계약 상대방인 피고는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희경

별지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청약철회 등)

-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 ② 방문판매자등(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및 소비자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은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1)이는 원고가 철회권을 행사한 2022. 1. 10.로부터 방문판매법 제9조에서 계약금 반환기한을 정한 3영업일 다음날이다.